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09. 14.

발의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경위

2007.9.14.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회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제안사유

2007.5.11 지방자치법이 법률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(안 제1조)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62조

5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6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7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-----